

군포도시공사 제5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2021년 9월 6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80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①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직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
3.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직원
4.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는 직원
5.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휴직, 육아 휴직 제외)기간 중에 있는 직원
6.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행위로 수사 또는 기소 중에 있는 직원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지 원 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
	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성 용 현
	담당자 성명 (전 화)	황 기 성 (390-7615)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28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휴직기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제28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직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 3.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직원 4.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는 직원 5.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제외)기간 중에 있는 직원 6.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행위로 수사 또는 기소 중에 있는 직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Ⅲ. 직원의 인사

⑧ 투명한 윤리경영

마. 승진 제한

- 지방공사·공단·공단의 장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해야 하며, 징계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승진을 제한해야 함

1. 강등·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